금융산업발전협의회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정책과제

2008. 6. 27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ri 보험연구원

차 례

Ⅰ.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적립금 규모(2008년 4월)는 3조 3,772억원: 2005년 12월 대비 207배 증가 추이

▶ 5인 이상 사업체근로자 680만명 중 9%인 64만명이 가입

퇴직연금 적립금 및 가입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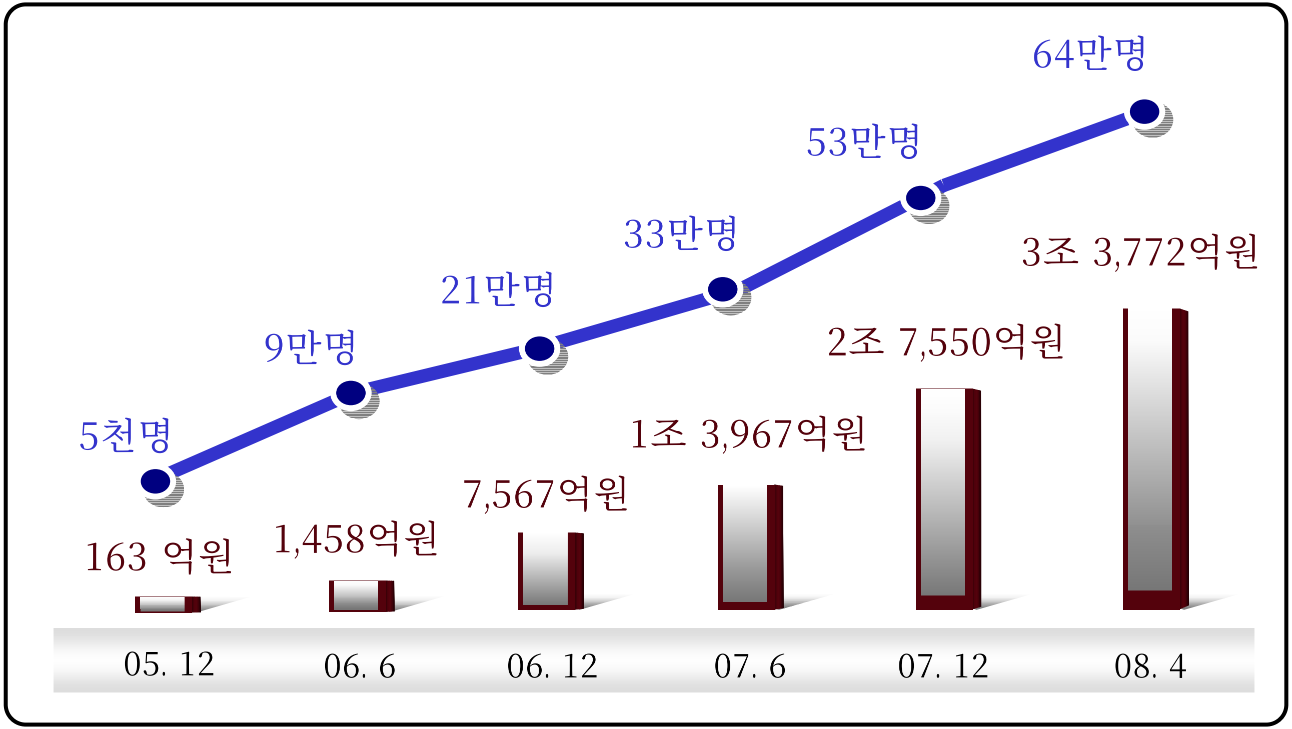

Ⅰ.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보험사(49.4%), 은행(40.4%), 증권사(10.2%) 순으로 적립금 점유율 비중 시현
- 증권사, 약 10%대의 적립금 점유율 유지

금융권별 적립금 점유율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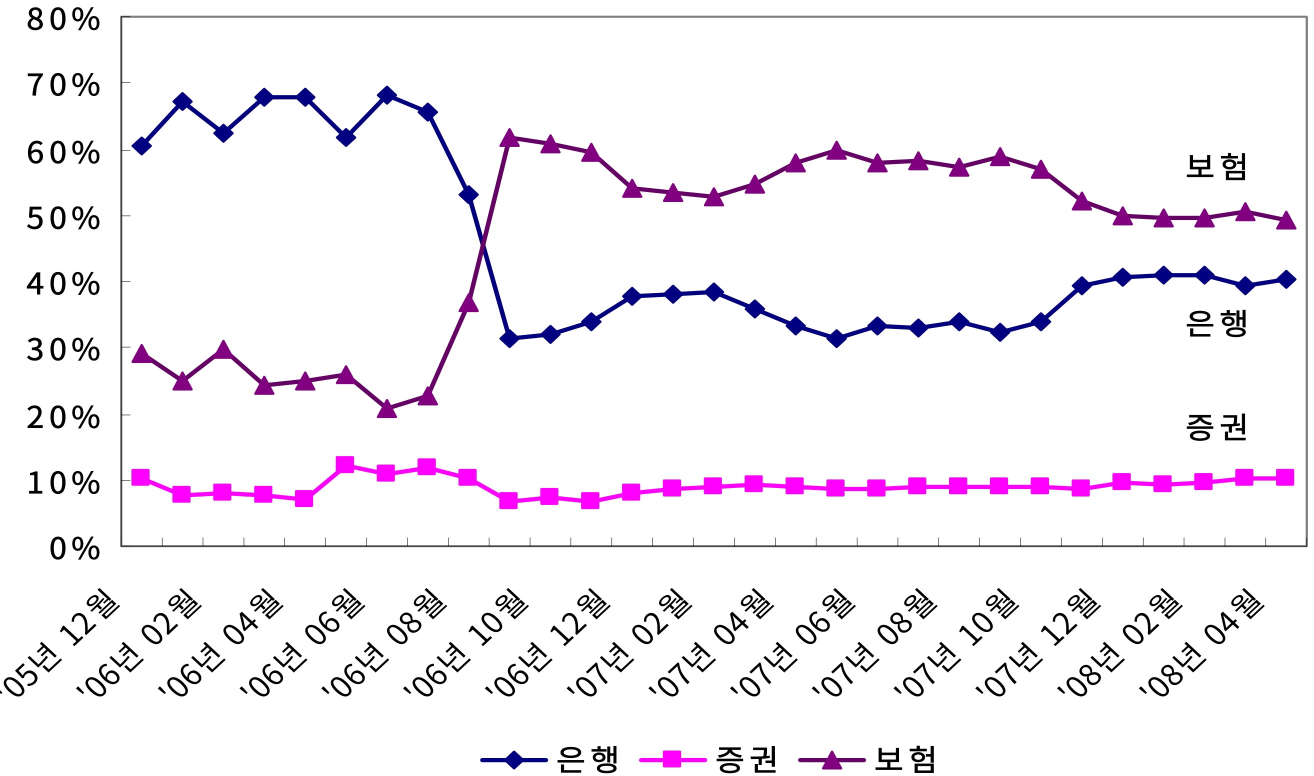

Ⅰ.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DB형 중심의 시장 구조속에서 DC형 증가 추세
- 보험 및 은행은 DB형 위주, 증권사는 DC형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

퇴직연금 형태별 적립금 점유율 실태

(단위: %)

구분	연도	DB	DC	IRA
은행	2005. 12	33.0	28.2	38.8
	2006. 12	41.8	40.3	17.9
	2007. 12	53.4	33.8	12.8
	2008. 04	50.9	36.9	12.2
보험	2005. 12	61.5	37.5	1.0
	2006. 12	88.6	10.7	0.7
	2007. 12	82.0	12.2	5.8
	2008. 04	81.5	14.0	4.5
증권	2005. 12	11.0	89.0	0.0
	2006. 12	32.7	67.1	0.2
	2007. 12	39.1	60.5	0.4
	2008. 04	38.1	61.4	0.5
합계		64.7	28.1	7.2

주: 합계는 2008. 4 기준임

Ⅰ.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운용리스크 부담,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근로자선호도 증다
- 원리금보장형: 보험 > 은행 > 증권, 실적배당형: 은행 > 증권 > 보험

금융권별 적립금 운용 실태

(단위: 억원, %)

구분		2005. 12	2006. 12	2007. 12	2008. 04
원리금보장형	은행	25	1,975	7,671	10,337
	보험	46	3,549	11,024	15,228
	증권	1	120	585	914
원리금보장형 합계		72 (44.2%)	5,644 (74.6%)	19,280 (70.0%)	26,479 (78.4%)
실적배당형	은행	4	336	1,962	2,774
	보험	1	61	1,162	1,344
	증권	5	392	1,442	2,182
실적배당형 합계		10 (6.4%)	789 (10.4%)	4,566 (16.6%)	6,300 (18.7%)
기타	은행	70	550	1,539	516
	보험	0	481	1,579	118
	증권	10	103	587	360
기타 합계		80 (49.4%)	1,134 (15.0%)	3,705 (13.4%)	994 (2.9%)
총계		162	7,567	27,551	33,773

Ⅰ.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퇴직연금 계약은 주로 소기업(84.1%) 중심으로 체결

▶대기업은 DB형, 중기업은 DC형, 소기업은 IRA기업형 중심으로 계약체결

회사규모별 계약체결 실태

(단위: 건, %)

기업규모	DB형		DC형		IRA 기업형		계	
	건수	비중[1]	건수	비중[1]	건수	비중[1]	건수	비중[2]
대기업	84	62.2	51	37.8	-	-	135	0.6
중기업	1,364	38.8	2,149	61.2	-	-	3,513	15.3
소기업	1,695	8.8	5,445	28.2	12,187	63.0	19,327	84.1
계	3,143	13.7	7,645	33.3	12,187	53.0	22,975	100

주: 1) 기업규모 내에서의 비중 2) 기업규모별 비중
3) 대기업은 300인 이상, 중기업은 300인 미만 20인 초과, 소기업은 20인 이하의 기업임

Ⅰ.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Ⅱ.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Ⅲ. 퇴직연금 제도의 제반 문제

Ⅳ. 금융회사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Ⅱ.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 우리나라: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1.9%에 불과(2006년 기준)

-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퇴직연금자산 규모가 GDP를 상회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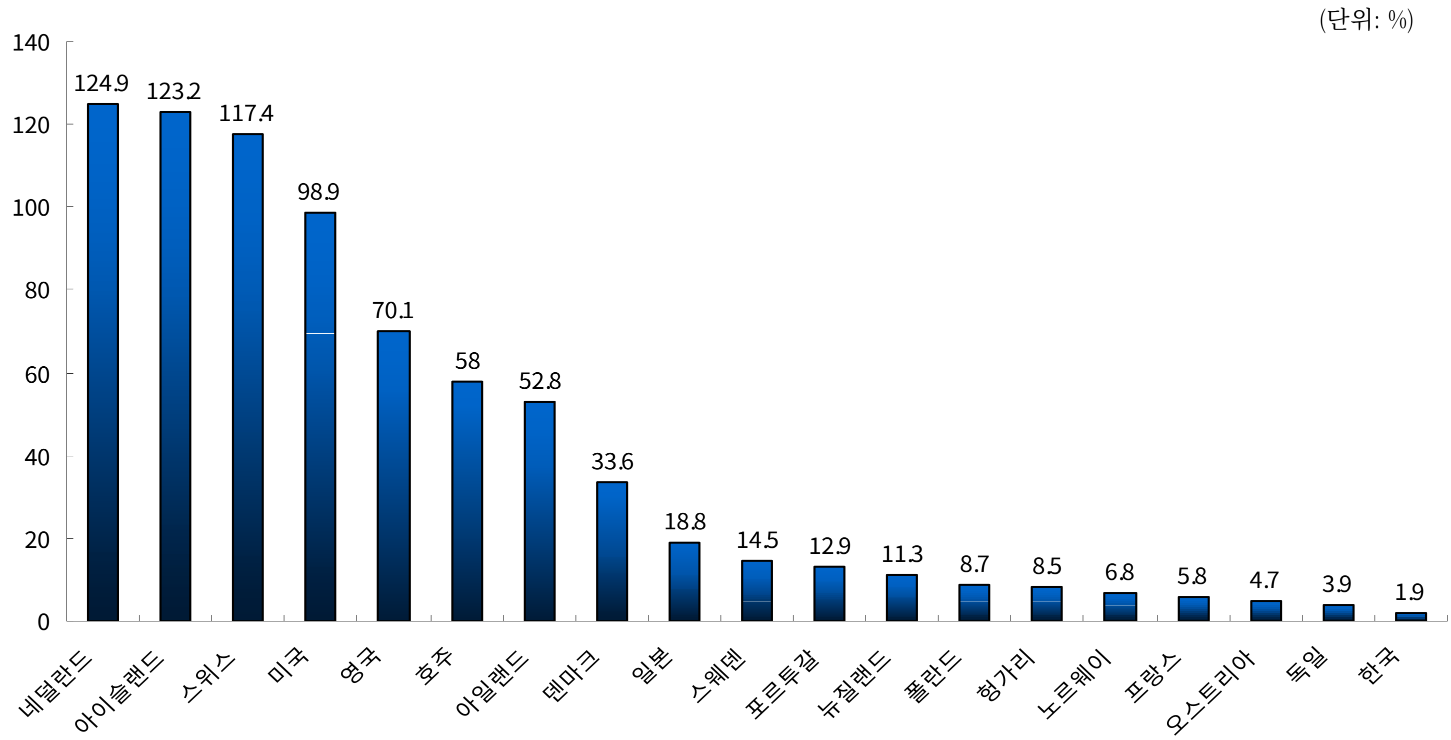

Ⅱ.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 임의가입형태를 띄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50%이상의 높은 가입률 시현

- 과감한 연금세제혜택으로 사적연금의 가입 유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률 국제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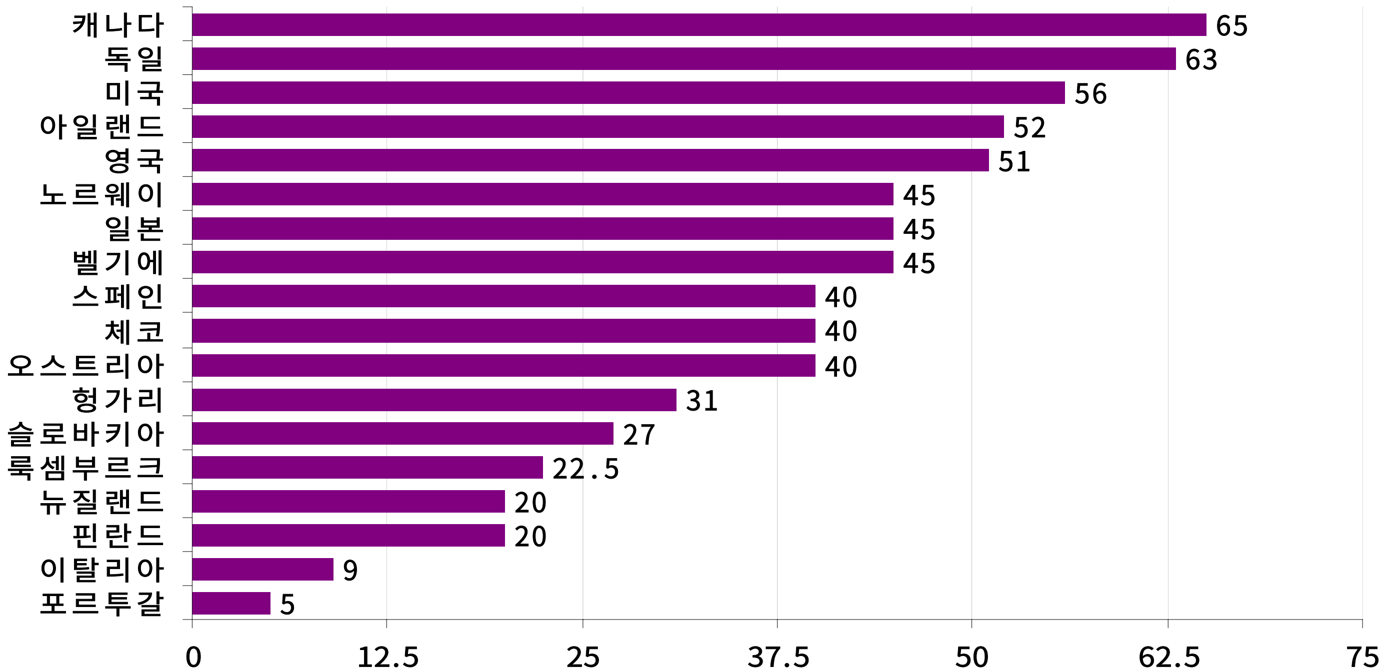

주: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

자료: OECD, Pensions at Glance, 2007

II.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 영국 등은 공적연금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적극 추진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축소는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으로 보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및 노후소득부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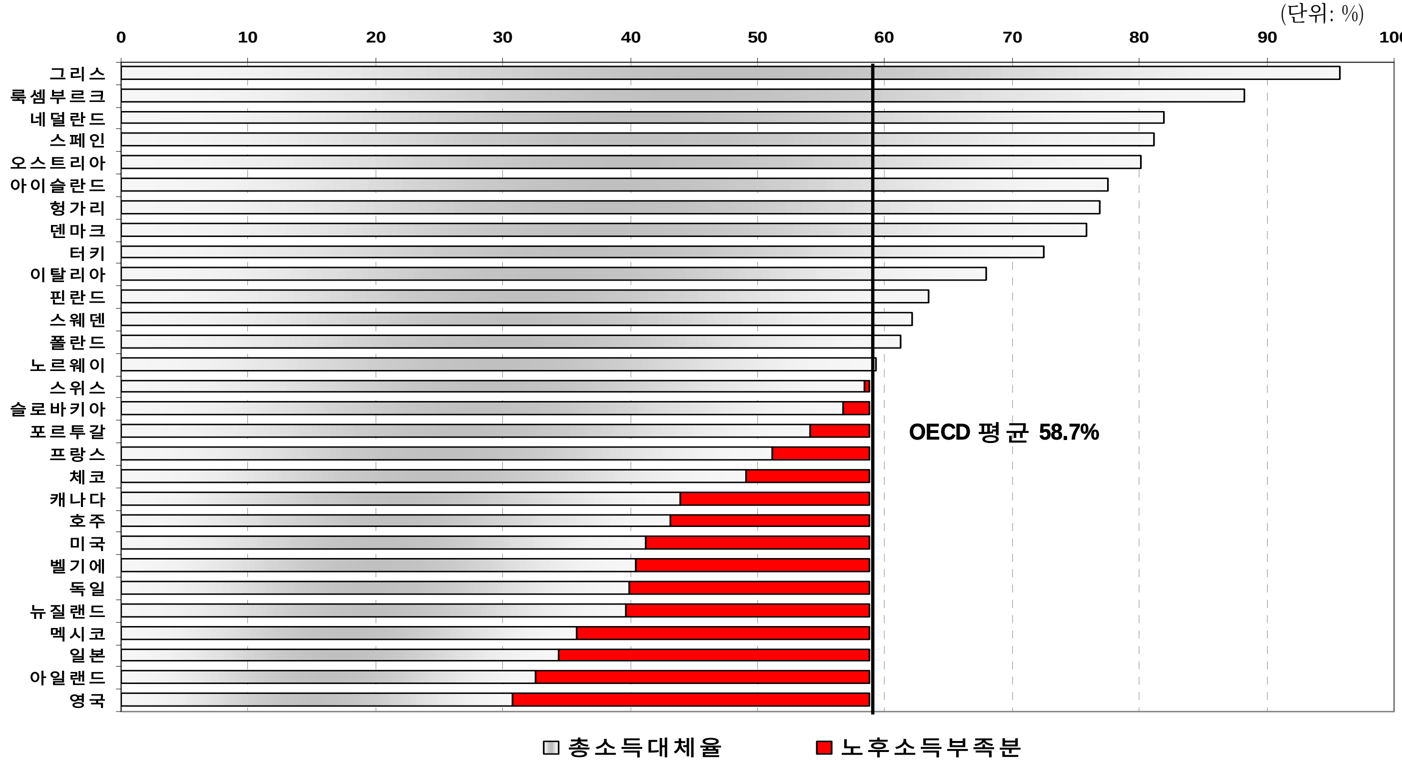

주: 노후소득부족분(retirement savings gap)은 각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OECD, Pensions at Glance, 2007

Ⅱ.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 미국, 독일, 영국 등: 퇴직연금 가입률 증가로 정부의 재정리스크 부담 경감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높음 (음의 상관관계)

퇴직연금 가입률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간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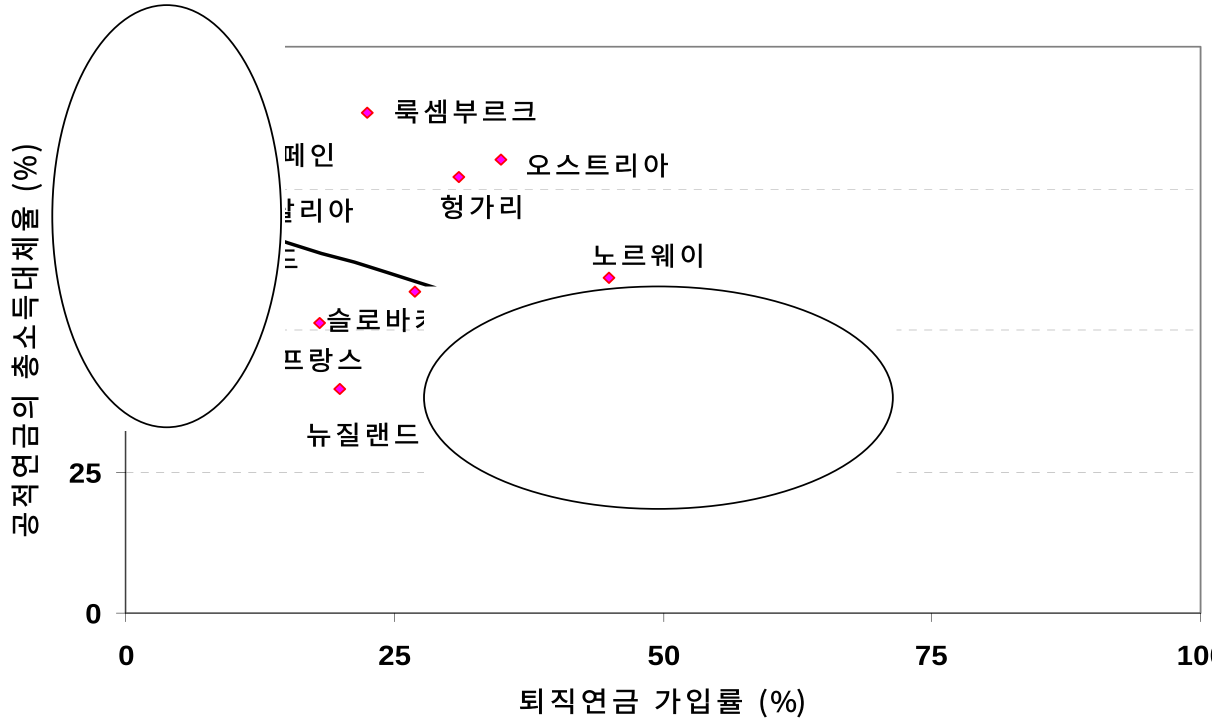

주: Occupational Private Pension Scheme 기준임

자료: OECD, Pensions at Glance, 2007

Ⅱ.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 캐나다, 미국 등은 사적연금 활성화로 노년층의 부유도 향상 도모
- 특히, 호주는 사적연금을 의무화함으로써 고령화 취약도 낮게 유지

사적연금규모와 노년층 부유수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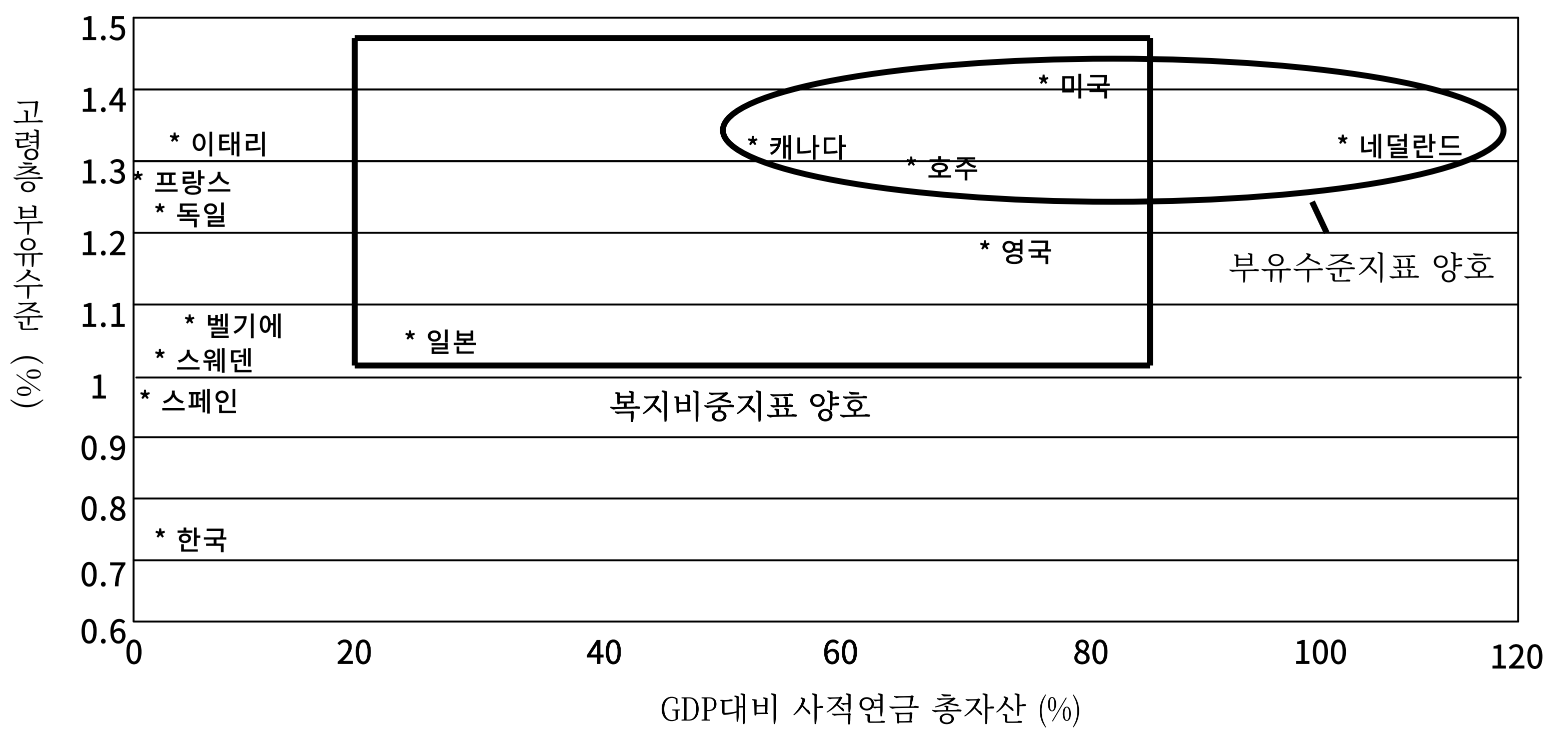

Ⅱ.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 미국, 영국, 아일랜드: 주식투자비중이 60%를 상회(퇴직연기금이 금융시장발전에 기여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채권중심의 퇴직연금 자산운용

퇴직연기금의 운용실태 (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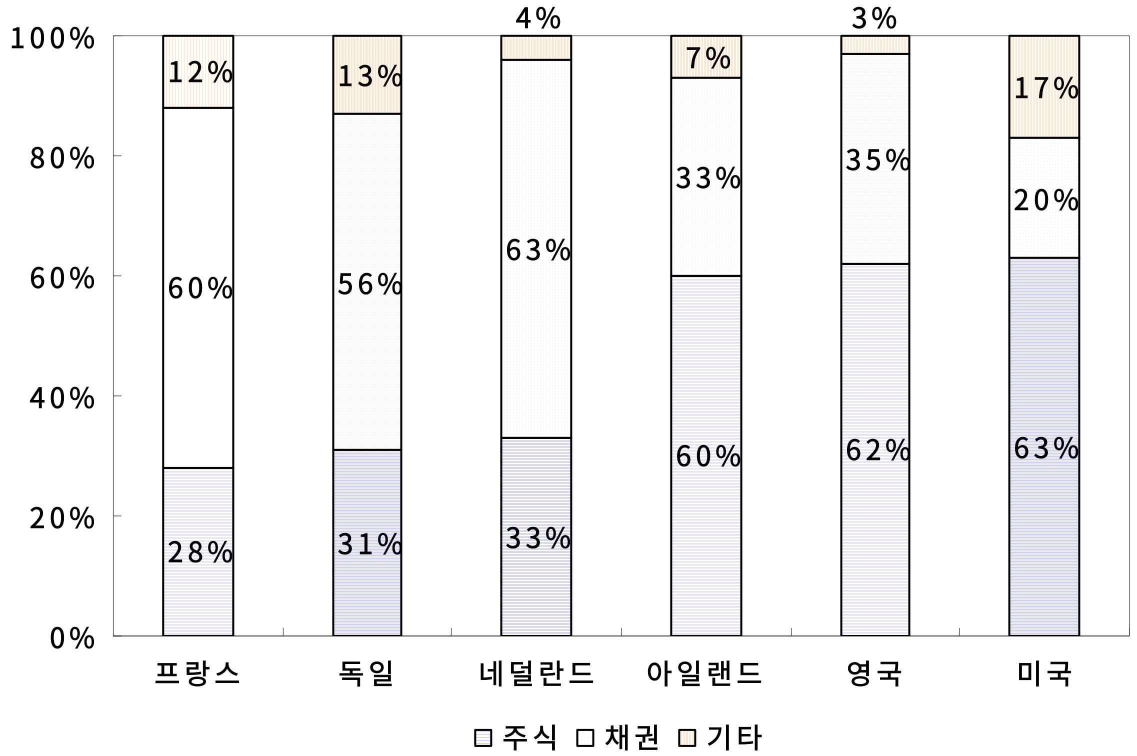

Ⅱ.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의한 실질 노후소득보장 효과는 매우 미흡(2007년 기준)

• 퇴직연금에 의한 근로자의 실질소득대체율: 12.6% 수준 → 퇴직연금역할강화 절실

퇴직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평가 (근로자 대상)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55세 수급개시, 은퇴기간까지 수급)				
	20년	25년	28년	30년	35년
시나리오Ⅰ (비관)	10.4%	10.8%	11.1%	11.3%	11.7%
시나리오Ⅱ (현재)[1]	11.5%	12.2%	12.6%	12.9%	13.6%
시나리오Ⅲ (낙관)	12.7%	13.7%	14.3%	14.7%	15.7%

주: 1) 퇴직연금 시나리오(임금상승률 4.7%, 운용수익률 3.79%) 가정

2) 근로기간 28년, 은퇴기간 24년 가정

Ⅰ.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Ⅱ.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Ⅲ. 퇴직연금 제도의 제반 문제

Ⅳ. 금융회사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III. 퇴직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자산운용규제 측면 (우리나라)

- 질적규제(자율규제)보다 건전성제고 차원에서 양적규제(Legal List Rule) 지향
  -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폭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제약 가능성 존재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유형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예금
DB	30%	50%	제한없음 (BBB- 이상)	주식형· 혼합형: 50% 채권형: 제한없음	투자금지	제한없음
DC	투자금지	투자금지	제한없음 (BBB- 이상)	주식형· 혼합형: 투자금지 채권형: 제한없음	투자금지	제한없음

주: 2008년 6월 기준

III. 퇴직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자산운용규제 측면 (외국)

- 영·미 등 앵글로색슨 국가: 선관주의(Prudent Men Rule)에 입각한 질적규제로의 전환
- 독일 등 대륙국가: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양적규제를 견지
  - OECD국가: 대체로 DB형에 대해서는 양적규제, DC형에 대해서는 질적규제 시행

OECD 주요국의 자산운용규제

국가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대출
호주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가입자에 대한 대여 및 대출거래 금지)
영국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고용주의 차입 및 보증금지
미국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고용주의 차입 및 보증금지
캐나다	30%	25%	제한없음	30%	제한없음
독일	30%	25%	50%	50%	50%
덴마크	40%	40%	제한없음	40%	제한없음

III. 퇴직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퇴직연금 지급보장(수급권 보호) 측면 (우리나라)

- 기업은 적립금의 60%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권 보호에 문제 노출
- 우리나라도 퇴직금 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협의의 수급권보장장치는 존재
  - 다만, 기업 도산시 완전한 수급권 보장의 어려움 존재 → 퇴직연금활성화 제약

퇴직연금 지급보장 장치

	퇴직금 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기금
근퇴법	제11조	임금채권보장법 8조
보상범위	최근 3년분에 한정	최근 3년분, 상한액 설정
적용대상	퇴직연금제도 적용	법정퇴직금에 한정
특 징	사업주 재산이 있을시 지급	연금지급급부공사 일부 역할
영 향	기업 및 금융기관 도산 방지 ⇒ 근로자 수급권 미흡	

III. 퇴직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퇴직연금 지급보장(수급권 보호) 측면 (외국)

- 선진국: 기업도산시, 연금지급보장제도 도입에 의한 연금 지급 의무화
  - 미국, 영국 등은 Take-Out 방식, 독일, 스웨덴 등은 Buy-Out 방식으로 연금지급 보장

퇴직연금 지급보장장치

	정부기관	민영기관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일본
운영방식	Take-over (예외: 캐나다)	Buy-out (예외: 스위스)
지급보장의 안정성	국가기관 직접보장으로 안정성 우위	민영보험으로 해결 (단,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
비효율성	자산운용수익으로 비용을 일부 충당	비교적 단순한 운영으로 비용우위
운용의 독립성	독립성확보가 어려울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나 정관 등 규정에 독립성 명확하게 확보 필요	원칙적으로 독립성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관련법규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결정

III. 퇴직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퇴직연금 지배구조 측면 (우리나라)

- 근로자의 투자지식, 신탁제도의 미발달 등을 고려,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 채택
  - 연금제도에 대한 관리 및 기금운용 등을 일괄하여 금융회사에 위탁
- 계약형은 상대적으로 기금형(신탁형) 보다 금융시장 발달 기여에 역할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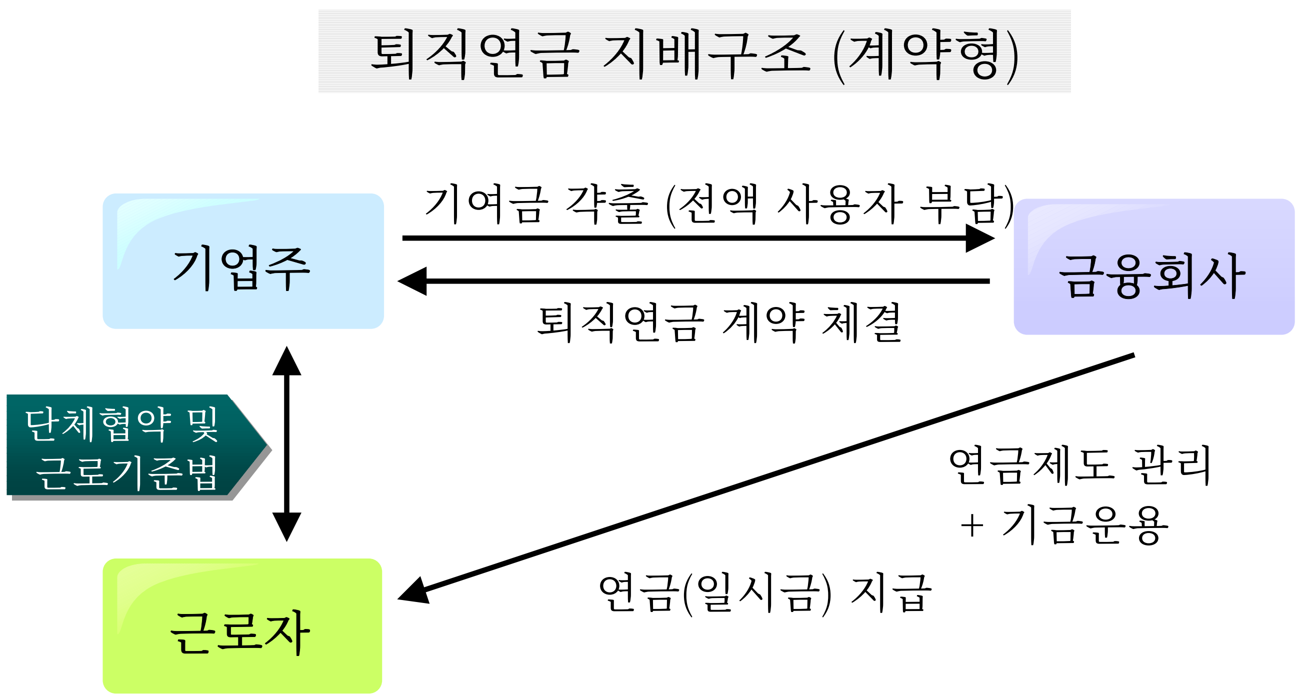

III. 퇴직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퇴직연금 지배구조 측면 (외국)

❑ 선진국: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전환,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

• 회사와 독립된 연기금 설치(정책결정: 노사동수의 위원회), 기금운용 등은 외부기관에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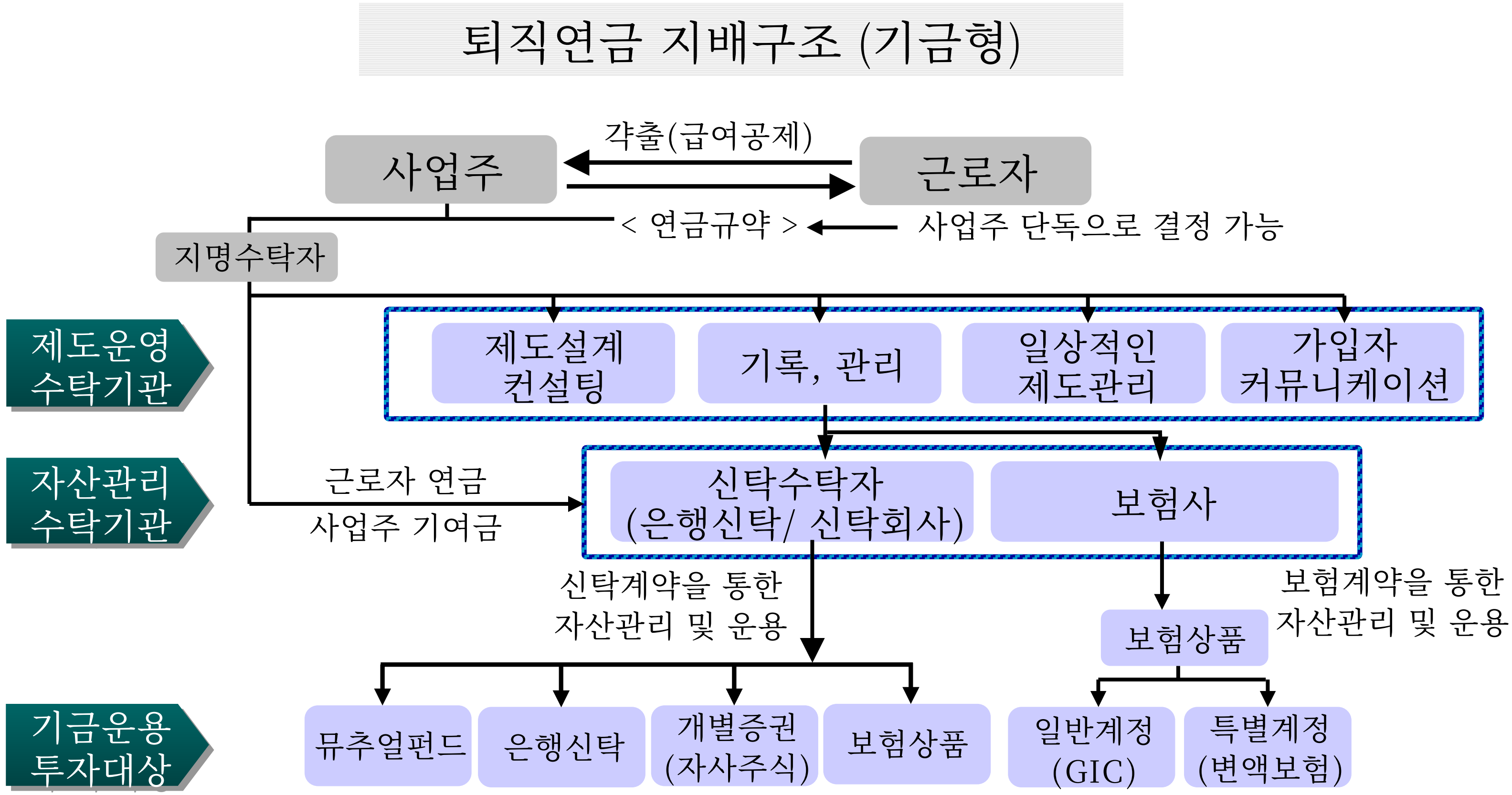

III. 퇴직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퇴직연금 전환 대책 측면 (우리나라)

- 연금세제 혜택의 미흡 등으로 연금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시스템 작동에 한계 노출
  - 법정퇴직금제 및 중간정산제 존재, 과감한 중도인출제 허용, 개인퇴직계좌 기능 미약 등

퇴직연금 전환 대책

	세부 내용
연금 세제	퇴직급여 불입액 중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 기업의 퇴직급여 충당금 손비한도 (현재 35% → 2009년 이후 30%) ▪ 퇴직연금 수령시 소득공제한도 900만원 ▪ 기존 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45%
중간정산제	허용
중도인출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등에도 중도인출 허용
퇴직금 일시금수령	아무런 제약 없음
법정퇴직금제	높은 만족도 유지 (설문조사의 약 56%)
개인퇴직계좌(IRA)	기능 미흡 (근로자에 국한)

III. 퇴직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퇴직연금 전환 대책 측면 (외국)

- 호주 등은 과감한 연금세제 혜택 부여로 퇴직연금 전환 유도
- 퇴직연금 제도가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

퇴직연금 전환 대책

	세부 내용
연금 세제	▪ 호주: 퇴직연금기여액에 대해 최저세율(15%) 적용 ▪ 미국: 2007년 기준, 1만 5,500달러까지 세제혜택
중간정산제	폐지
중도인출제	▪ 일본: 중도인출 불가 ▪ 미국: 사망, 상해퇴직 등 예외적으로 인정(임의 중도인출시 10% 패널티세 부과)
퇴직금 일시금수령	대부분 퇴직일시금 수령을 제한
법정퇴직금제	미존재
개인퇴직계좌(IRA)	전국민, 자영업자까지 확대 (개인연금의 기능 담당)

III. 퇴직연금제도의 제반 문제

공사연금 역할 분담 체계 측면

- 우리나라: 공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견지(사적연금의 제한적 역할)
- OECD국가의 경우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을 일부 대체하거나 공적연금 일부 적용제외
  → 공사연금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

OECD 주요국의 역할분담 체계

국가	제도형태	퇴직연금 기능
미국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보완
영국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적용제외
일본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보완, 적용제외
독일	DB형	공적연금보완
스웨덴	DB형 (DC형 전환)	공적연금보완
프랑스	DB형 (명목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호주	DC형	공적연금 완전대체
캐나다	DB형	공적연금보완
네덜란드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덴마크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핀란드	DB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스위스	DB형 또는 DC형	공적연금 일부대체
이탈리아	DC형	공적연금보완

Ⅰ.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Ⅱ.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역할

Ⅲ. 퇴직연금 제도의 제반 문제

Ⅳ. 금융회사 역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IV. 금융회사 역할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비전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금융회사 역할 강화

목표

- 질적규제 중심으로 점진적 자산운용규제 완화
- 최소한의 지급보장장치로 퇴직연금 가입 유도
- 연금지배구조의 다양화로 금융시장 발전 도모
-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유도
- 퇴직연금중심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분야

- 자산운용규제
-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 퇴직연금 지배구조
- 퇴직연금 전환대책
- 공사연금역할 분담체계

IV. 금융회사 역할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자산운용규제 측면

목표

질적규제 중심으로 점진적 자산운용규제 완화

대책

- ❑ 양적규제 중심에서 질적규제 중심으로 운용규제 방식을 전환, 금융시장 발전 유도
  - 다만, 수탁자책임과 수급권보호장치 등과 같은 규제완화의 보완조치는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성 존재
- ❑ 단기적으로 투자가능 유가증권범위의 확대 및 DB형 간접투자 한도의 점진적 확대 필요
- ❑ 점진적으로 투자한도 규제에서 총량규제로의 전환 필요
  - 적립률(자산/부채)에 따른 운영 Risk 관리체계 마련 등

IV. 금융회사 역할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측면

목표

최소한의 지급보호장치로 퇴직연금가입 유도

대책

- 적립금수준의 연차적 상향 조정 또는 최저 적립기준액 100% 설정 검토
- 퇴직금우선변제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범위를 퇴직연금제도로 확대 적용
- 실질적 수급권보호차원에서 미국의 연금지급보장공사와 같은 별도의 연금지급보장제도 도입 ·운영
  - 연금지급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을 고려, 정부차원의 도입지원대책 강구

IV. 금융회사 역할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퇴직연금 지배구조 측면

목표

연금지배구조 다양화로 금융시장 발전 도모

대책

- 근로자수급권, 금융정책 및 시장의 여건, 그리고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배구조 재검토 필요
- 계약형 지배구조상의 근로자 이익상충문제 해소, 제3자적감시기능 제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
  - 공인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에 의한 자율적 감시기능 강화
- 기금형 등 다양한 퇴직연금 지배구조 도입으로 금융기관 역할 및 금융시장 발전 도모
  - 연금컨설팅, 계리법인, 펀드매니저의 기능 강화 등

IV. 금융회사 역할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퇴직연금 전환 대책 측면

목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유도

대책

- ❑ 퇴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퇴직연금전환대책 마련
  - 연금소득공제 확대, 중간정산제 폐지 및 중도인출제의 완화, 일부 연금가입의무화 및 법정퇴직금제 폐지 등에 대해 검토
- ❑ 새로운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폭 확대
  -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다양성 확보
- ❑ IRA 제도의 활성화: 퇴직연금 역할 이외에 개인연금 역할 수행
  - 가입대상의 확대(자영업자, 전국민), IRA에 근로자 추가적립 허용 등

IV. 금융회사 역할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공사연금 역할 분담 체계 측면

목표

퇴직연금 중심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대책

- ❑ 공적연금 중심에서 사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
  - OECD 주요국에 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효과 미흡
- ❑ 노후소득보장체계 틀속에서 공사연금간의 유기적 역할 분담체계 모색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 적정소득대체율 설정(연금제도 개선로드맵 마련)
- ❑ 퇴직연금(개인연금)이 공적연금을 일부 대체하거나 공적연금의 일부 등을 적용제외하는 방안 모색
  - 일본 및 영국 등과 같이 적용제외(contract out)조항 신설에 의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문을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적용제외 시키는 방안 검토

감사합니다 !